

식민지 조선의 “본부살해(本夫殺害)” 사건과 재현의 정치학: ‘조선적’ 범죄의 구성과 식민지적 ‘전통’*

홍 양 희**

서론

I. ‘수(數)’의 재현과 ‘조선적’ 범죄의 구성

II. ‘독부(毒婦)’와 ‘소부(少婦)’의 교차

맺음말

요약

이 논문은 식민지시기 남편 살해라는 범죄가 조선 “특유”의 여성 범죄로 만들어지는 방식과 거기에 내재된 식민지 정치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일본인 관료 및 의사, 조선인 언론 및 지식인들에 의해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었으며, 거기에 내재된 함의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부살해” 사건에 대한 담론은 식민지에서 모더니티가 작동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주지하듯이 ‘조혼’은 식민지 이전부터 문명개화론자들에 의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없애야할 ‘폐습’이었다. 그렇지만 조혼과 남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5).

**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투고일: 2011년 5월 15일

심사일: 2011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3일

편살해 사건은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였지, 상호 직접적 관련을 가지는 원인과 결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당시 조혼이 가진 폐해를 부각시키는 방식은 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 부국강병과 관련하여 논의가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식민지에서 모더니티는 문명화 기준에 맞지 않는 습속을 끊임없이 ‘악습’으로 재생산하였다. 그로 인해 식민지는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으로 대상화 되었다. 이런 점에서 남편살해 사건을 통한 ‘조혼’의 ‘악습화’는 식민지 ‘모더니티’의 작동 방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였다. 식민지에서 그것은 전율할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연결되면서 더욱 노골화되었다. 여기에서 나이 어린 여성들에 의해 벌어진 남편 살해 사건은 ‘조혼’이 가진 조선 풍습의 악랄성을 부각시키기에 적절한 재료가 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식민주의자들은 미개한 지역을 문명화시킨다는 사명으로, 고통받는 조선 여성들의 구원자로,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식민지 지식인들은 자국의 독립 혹은 발전이 문명화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는 사고를 내면화하게 된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기준에 의해 그것이 가진 식민지 정치성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본부살해”라는 흉악한 여성범죄의 원인이 조혼이었기 보다는, ‘남편 살해’라는 범죄가 ‘조혼’을 ‘악습’으로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담론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선의 낙후성, 그것의 처절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소재가 남편살해 사건이었고, 이를 통해 문명화/모더니티의 논리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부살해”는 ‘조혼’이라는 ‘식민지적 전통’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담론적 상징물이었다.

주제어 : 본부살해, 조혼, 전통, 모더니티/근대성, 식민지적 재현, 여성 범죄

서론

192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건 중의 하나는 소위 “독살미인”으로 불린 ‘김정필 사건’이었다. 남편을 독살한 미모의 살해범, 그녀의 공판이 열린 종로에는 이를 방청하고자 쇄도하는 군중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그녀의 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흉악범’과 ‘미인’이라는 상반된 이미지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대중들의 관음증적 호기심이 그러한 인파를 형성하였을 것이지만,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이미지의 불일치가 발생시키는 효과는 “빙충마진 남성들의 헛물켜기적 방청”,¹⁾ 그 자체만은 아니었다. 남편 살해가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그것은 조선에서 “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조선 “특유”의 범죄로 세간에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그 원인으로 조선의 결혼 습속, 특히 조혼이 지목됨으로써, 식민지시기 ‘남편살해’ 사건은 조선의 문화적인 전통을 반영하는 상징적 범죄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당시 ‘남편살해’ 사건이 담론화 되는 방식은 식민지에서 ‘전통’이 만들어지는 한 단서를 제공한다.²⁾ 주지하듯이 “人的 國을 亡케 하고 人的 族을 滅케 하는 者”라 하여,³⁾ 일찌감치부터 “조혼하는 악습”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었다.⁴⁾ 한말의 문명개화론자들에게 ‘조혼’은 국

1) 「사설 소위 조선 특유 범죄문제」, 『조선일보』 1929. 10. 24.

2)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本夫’라는 용어 보다는 ‘남편’이라는 용어를 쓴다. 식민지시기 조선인 사이에서 ‘본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姦夫’의 상대어로 사용되었다. 본부라는 용어에는 간부가 존재한다는 가치가 이미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식민지시기 남편 살해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로 쓰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만 직접 인용일 경우에는 그대로 쓴다.

3) 「조혼의 폐해를 통론함」, 『황성신문』 1909. 9. 3.

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없어져야만 할 악습이었다.⁵⁾ 그러나 당시 전개 되는 조선 습속에 대한 논의는 문명론적 관점에 기반하여 그것이 가진 국가적/민족적 폐해가 지적되었을 뿐, 남편살해 사건과 같은 범죄 현상과 연결시켜 사고하지는 않았다.⁶⁾ 이런 점에서 볼 때 남편살해 사건에 대한 담론들은 식민지 조선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구성되는 방식을 보여준다.⁷⁾ 여성은 조선 사회의 문화적 습속을 체현하고 있는 전통의 담지자로 표현되었으며 ‘식민지적 전통’이-그것이 폐습이든 미풍이든-만들어지는 지점이었다. 더욱이 남편 살해 사건을 둘러싼 당시의 논의는 식민지라는 특정한 정치적 맥락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여성’과 ‘전통’을 둘러싼 식민지적 재현의 문제를 드러낸다.

지금까지 식민지시기 “본부살해”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각기 논점을 달리하여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남편살해 사건에 대한 식민자의 지배담론이 창출한 효과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⁸⁾ 범죄를 야기한

4) 「혼인론」, 『독립신문』 1899. 7. 20.

5) 「早婚之弊」, 『독립신문』 1896. 6. 6.; 「舊習改良論」, 『ㅁ | 일신문』 1898. 6. 6.; 「婚禮之弊」, 『ㅁ | 일신문』 1898. 9. 24.; 「즈미잇는 문답」, 『독립신문』 1899. 6. 20.; 「早婚之弊論」, 『독립신문』 1899. 10. 7.; 윤치호, 「대한자강회 연설, 조혼의利害」, 『황성신문』, 1906. 7. 23.; 金圭鎭, 「早婚의 弊」, 『서우』 제8호, 1907. 7. 1.; 「習慣改良論」, 『태극학보』 제8호, 1907. 5. 24.

6) 한말에도 남편 살해사건은 종종 신문기사에 나타나고 있다. 「殺獄罪因論」, 『제국신문』, 1899. 1. 17.; 「淫女殺夫」, 『ㅁ | 일신문』, 1899. 2. 7.; 「姦夫殺夫」, 『ㅁ | 일신문』, 1899. 3. 21.; 「刺殺本夫」, 『제국신문』 1901. 7. 26.; 「殺夫見殺」, 『황성신문』 1901. 12. 21.; 「謀殺本夫」, 『대한일보』 1904. 5. 28.; 「姦婦殺夫」, 『대한매일신보』, 1905. 8. 18.

7) 식민지 인도에서 ‘사티’가 어떻게 인도의 ‘전통’으로 발명되었는지를 연구한 라티 마니에 의하면 식민지에서 여성은 전통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식민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의 담론이 경합하는 장소였다. 여성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담론의 역사는 식민지의 전통, 문화, 정체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이 구성되는 지점이었다는 것이다(Lata Mani, 1987, "Contentious Tradition: The Dabate on Sati Colonial India", *Cultural Critique*, Autumn).

8) 이종민, 2000, 「위험한 희생양: 식민지 여성 범죄를 읽는 관점의 문제」, 『성심사학』 6집.

제도적 배경으로 조혼이 지목되어 비판받는 논리가 조선총독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산되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와 의미가 확산되었는지에 초점이 있는 연구이다. 즉 이들 담론이 당시 조선사회에 내재해 있는 후진적 비합리성과 감정적 측면을 비판하는 도구로 충실히 활용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식민주의 담론의 실체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그 연구사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식민지 관료인 일본인들의 시선만을 다룸으로써, 조선사회가 그들의 담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착목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남편살해’의 원인을 ‘조혼’과 직접 연결시키는 연구이다. 남편 살해를 비롯한 식민지시기 여성 범죄는 조혼 및 가족제도에서 고통받던 여성들이 강제된 결혼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이다.⁹⁾ 이 연구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타개하려는 여성들의 주체적인 노력에 주목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지만, 식민지시기 일본인 관료 및 지식인 그리고 조선의 언론에 의해 생산된, 즉 당시 지배적인 담론을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임으로써 담론에 내재된 식민지 정치성을 탈각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남편 살해범을 바라보는 시선에 내재된 함의를 가족관의 변화로 해석하는 최근의 연구도 있다.¹⁰⁾ ‘독부’로 비난받던 것에서 사회의 희생자인 ‘소부’로 동정을 받게 된 이들 여성에 대한 시선의 변화, 그리고 무조건적 단죄가 아니라 살해 원인을 분석한다는 점은 유교적 가족 윤리의 후퇴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논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독부’와 ‘소부’를 단선적이고 이원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1930년대를 전후하여 ‘독부’에서 ‘소부’로의 변

9) 류승현, 2001, 「일제하 조혼으로 인한 여성 범죄」, 박용옥 엮음, 『여성: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10) 전미경, 2010, “식민지기 본부살해 사건과 아내의 정상성: ‘탈유교’화 과정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9권 1호.

화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시선은 식민지라는 동일한 시공간 안에서 서로 교차되거나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이 서로 정반대의 의미망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었다. 둘째, 범죄 원인 분석을 가족관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이는 범죄가 근대법의 원리에 의해 규율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지, 이것을 유교적 가족윤리의 후퇴로 보는 것은 논리 비약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인 지식인이나 조선인 언론에서 보이는 가족관은 변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서구적 ‘모더니티’를 준거로 하는 선행적 의미의 담론 구성의 측면이 강하지 않은가 한다.

끝으로, 범죄의 주체인 여성과 객체인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에 작동하는 정치를 논하는 연구가 있다.¹¹⁾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남성이 살해범인 여성을 바라보는 각각의 시선을 분석하면, 조선인 남성은 살해범인 여성을 ‘독부’로, 일본인 남성은 나쁜 조선인 남성에게 억압받는 ‘소부’라는 정형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선인 남성이 자신들의 건전성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남편을 살해한 병리를 여성에게 전가한 반면, 일본인 남성은 식민 지배자의 자애로움을 구현하기 위해 정신적·신체적 결합이 있는 조선인 남성들을 주조하는 정치적 맥락이 작동하였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는 식민지 조선에서 담론 구성이 가진 정치성을 명확히 포착하고 있는 반면,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하나는 일본인 남성의 논리를 일본인 의사 한 명의 논의만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일본인 남성 관료들의 논의는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남성의 논리를 지나치게 이항 대립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들의 시선은 그다지 매끄럽게 이분화 되어 평행선을 달리지는 않았다는 것이

11) 장용경, 2007, 「식민지기 본부살해사건과 여성 ‘주체’」, 『역사와 문화』 13.

본 연구자의 생각이다. 일본인 관료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각각 서로 병렬적으로 존재하면서 전혀 다른 의미망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서로 교차됨으로써 또 다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남편살해’ 사건과 그 사건의 주체가 재현되고 의미화 되는 방식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편 살해 사건’이 “조선 특유”의 여성 범죄로 구성되는 방식과 거기에 내재된 식민지 정치의 문제를 추적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의 초점은 남편살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혼’이 조선의 ‘사실상’의 습속인지 아닌지를 구명하는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조혼’을 조선의 ‘악습’이자 ‘전통’으로 만드는데 작동한 “본부살해” 사건의 담론적 효과를 추적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식민지의 일본인 관료 및 지식인과 조선의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이들 사건, 범죄의 주체인 여성 및 범죄의 대상인 남성,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재현하였는지를 구명할 것이다.¹²⁾ 우선, 식민지 시기 ‘남편살해’ 사건이 조선 “특유”의 여성 범죄로 지목되는 방식을 문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작동하는 정치성을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전통적 관습, 여성이라는 범죄의 주체, 남성이라는 범죄의 객체를 둘러싸고 일본인 관료 및 지식인, 조선 지식인 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얽혀 조선의 식민지적 ‘전통’을 발명해내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12) 이 글에서는 민족주의 지식인의 논의는 주로 『동아일보』를 인용하였다. 1920, 30년대 문화적 민족주의의 구체적인 운동은 신문화건설 운동으로 나타났으며, 이 운동의 가장 선봉은 『동아일보』였다. 그런 점에서 『동아일보』의 논의는 당시 민족주의 진영의 논의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박찬승, 2007, 『민족주의의 시대-일제하의 한국민족주의』, 경인문화사, 91~100쪽).

I. ‘수(數)’의 재현과 ‘조선적’ 범죄의 구성

살인은 인간이 자행하는 범죄 중 가장 크고 흉악한 범죄이다. 더욱이 그 대상이 자신의 가족, 즉 부모나 남편, 처 혹은 자녀라면 그 범죄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나 남편을 살해하는 행위는 조선시대부터 강상의 윤리에 반하는 행위로 일반 범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받았다.¹³⁾ 더욱이 근대적 가족 윤리에서 부부는 사랑에 의해 가족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토대이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편을 살해하는 행위는 사회의 가장 근저를 허무는 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였다. 그런 만큼 가족원에 대한 살해, 그 중에서도 남편 살해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에서 ‘처’들이 자신의 ‘남편’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건이 조선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姦夫姦婦 공모하여 본부를 살해한 사실은 조선 전도 누구나 모를 리 없듯이 ‘朝飯前事로 아는지’ 여기저기서 발생된다.”¹⁴⁾ 당시 신문 기사는 그것을 보여준다.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식민지 조선만의 문화 정체성(identity)을 드러내는, 조선 “특유”의 사건이자 여성 범죄로 회자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선 특유의 범죄로 가장 먼저 주목한 것도, 그것을

13) 박경, 2009, 「살옥(殺獄) 판결을 통해 본 조선후기 지배층의 부처(夫妻) 관계상」, 『여성과 역사』 10집. : 유승희, 2010, 「조선후기 형법사상 젠더gender 인식과 여성 범죄의 실태」, 『조선시대사학보』 53.

14) 林耕一, 「조선의 범죄상」 6, 『조선일보』 1933. 2. 10.

석민지 조선의 “본부살해(本夫殺害)” 사건과 재현의 정치학

조선 특유의 범죄로 분석하고 담론화하기 시작한 것도, 조선인 자신이 아닌 일본인 관료였다. 그것은 바로 조선총독부의 고등법원 검사장 겸 사법부장관이었던 코쿠분 산카이(國分三亥)였다.¹⁵⁾ 1917년 『朝鮮彙報』에 실린 「朝鮮婦人の本夫殺害」라는 논문에서 그는 조선의 범죄 중 “가장 나의 주목을 끄는 것은 조선부인의 본부살해죄이다. 이 죄로 인해 처형당한 有夫의 婦는 그 수가 해마다 수십 명에 달한다.”¹⁶⁾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 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범죄로 남편살해 사건을 포착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이를 조선 특유의 사건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비교’와 ‘통계’의 이용이 바로 그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통계를 이용한 비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우선, 내지 일본에 비해 조선에는 여성 살인범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가 제시한 아래의 통계에 의하면, 내지와 조선에서 각기 전체 여성 형법범 중 살인범의 비율은 조선 여성 쪽이 내지 여성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았다.

【표 1】 내선부녀별 형법범과 살인범 비교¹⁷⁾

| 연차 | 내선 부녀별 | 형법범 총인원 | 살인범 총인원 | 형법범 총인원에 대한 살인죄 비율 |
|-------|--------|---------|---------|--------------------|
| 1911년 | 내지인 | 5,236 | 196 | 0.04 |
| | 조선인 | 460 | 62 | 0.13 |
| 1912년 | 내지인 | 4,691 | 251 | 0.05 |
| | 조선인 | 575 | 62 | 0.11 |

15) 1908년 한국 정부로부터 용병되어 대심원 검사총장으로 임명되어 한국사법권위임과 통감부 고등법원 검사장으로 보직하였다. 병합 후에는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장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1913년 사법부장관도 겸하여 1917년 당시에 이르고 있는 인물이다.

16) 國分三亥, 「朝鮮婦人の本夫殺害」, 『朝鮮彙報』, 1917. 3, 7쪽.

17) 고쿠분이 작성한 이 도표는 쿠도의 논문에도 그대로 인용되었다. 國分三亥, 「朝鮮婦人の本夫殺害」, 『朝鮮彙報』, 8쪽.; 工藤武城, 1933. 2, 「朝鮮特有の犯罪本夫殺害犯の婦人科學的考察(一)」, 『조선』 제213호, 38쪽.

| | | | | |
|-------|-----|---------|-------|------|
| 1913년 | 내지인 | 4,291 | 214 | 0.05 |
| | 조선인 | 679 | 79 | 0.12 |
| 1914년 | 내지인 | 3,356 | 260 | 0.08 |
| | 조선인 | 788 | 78 | 0.10 |
| 1915년 | 내지인 | 2,903 | 211 | 0.07 |
| | 조선인 | 866 | 100 | 0.12 |
| 계 | 내지인 | 20,477 | 1,131 | 0.06 |
| | 조선인 | 3,368 | 381 | 0.11 |
| 평균 | 내지인 | 4,095.4 | 226.2 | 0.06 |
| | 조선인 | 673.6 | 76.2 | 0.11 |

고쿠분의 논의를 더욱 치밀하게 논증한 것은 일본인 의사 쿠도 다케시로(工藤武城)였다.¹⁸⁾ 그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朝鮮』에 2차례, 1929년 3월부터 그리고 1933년 2월부터 각각 총 7회에 걸쳐 「朝鮮特有の犯罪-朝鮮婦人の本夫殺害の婦人科學的考察」, 「朝鮮特有の犯罪 本夫殺害犯の婦人科學的考察」이라는 거의 비슷한 장편 시리즈의 논문을 발표하였다.¹⁹⁾ 부인과 의사인 그는 금고 이상에 처해진 여성 범법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일본 내지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대만 등 타 지역과 비교하여 조선에는 여성 살인범이 특히 많다고 논증하였다. 그에 의하면, 1930년을 기준으로 살인 범죄를 행한 각국의 남녀 비율은 다음과 같다. 즉 위의

18) 1905년 10월 한성병원 산과부인과 부장으로 초빙되어 처음 경성으로 온 그는 이후 ‘경성부인병원’을 창립한 부인과 의사였다. 독일에서 胎生學, 여자비뇨기학 등을 수학하고 돌아온 유학파 출신이다. 그는 한국 부인학에 관한 왕성한 저술활동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19) 쿠도는 동일한 논문을 3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1929년 『조선』 3월호(166호)에 처음 「朝鮮特有の犯罪(一)-朝鮮婦人の本夫殺害の婦人科學的考察」을 시작으로 1929년 12월호(175호)까지 7회에 걸쳐 연재한다. 그 후 동일한 잡지인 『조선』에 1933년 2월부터 8월까지 7회에 걸쳐 「朝鮮特有の犯罪 本夫殺害犯の婦人科學的考察」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연재를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또한 일본에서 발행한 『犯罪學雜誌』에 1933년 9월부터 1935년 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1933년의 논문을 기본 사료로 이용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본부살해(本夫殺害)” 사건과 재현의 정치학

【표 1】과 아래의 【표 2】의 통계에 의하면, 조선에는 여성이 살인 범 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타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표 2】 각국 남녀 살인범 비례(1930년)²⁰⁾

| 국명 | 범인수 | 남 | 녀 | 남자100에 대한 여자 |
|-----|-----|-----|----|--------------|
| 독일 | 93 | 91 | 2 | 13.5 |
| 불란서 | 166 | 145 | 21 | 15.0 |
| 내지 | 616 | 552 | 64 | 11.0 |
| 대만 | 33 | 32 | 1 | 3.0 |
| 조선 | 141 | 75 | 66 | 88.0 |

다음으로는, 여성 살인범 중 남편 살해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고쿠분과 쿠도 모두 전체 여성 살인범 중 남편 살해범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입증하였다.

【표 3】 조선여자 살해범의 분류²¹⁾

| 종류 | 國分三亥(1911-1915년) | | 工藤武城(당시북역중인 살인범) | |
|----------|------------------|-------|------------------|------|
| | 명수 | 비율 | 명수 | 비율 |
| 여자살인총수 | 381명 | 100% | 106명 | 100% |
| 본부이외의 살해 | 253명 | 66.4% | 40명 | 37% |
| 본부살해 | 128명 | 33.6% | 66명 | 63% |

고쿠분에 의하면, 1911년부터 1915년까지 조선인 여성 범죄자 381명

20) 工藤武城, 1933. 2, 「朝鮮特有の犯罪本夫殺害犯の婦人科學的考察(一)」, 『조선』 제 213호, 40쪽. ‘남자 100에 대한 여자’ 항목은 쿠도가 원래 계산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계산이 맞지 않아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2.2, 14.5, 11.6, 3.1, 88.0

21) 國分三亥, 「朝鮮婦人の本夫殺害」, 『朝鮮彙報』, 1917. 3, 7쪽.; 조선총독부 편, 조사자료 제22집 『朝鮮の人口現象』, 1927. 12, 301쪽.; 工藤武城, 1933. 2, 「朝鮮特有の犯罪本夫殺害犯の婦人科學的考察(一)」, 『조선』 제213호, 38~39쪽.

중 남편살해 범죄수는 총 128건에 이른다. 이 통계에 의하면, 남편 살해범은 전체 여성 살인범 중 33.6%이다. 당시 복역 중인 여성 살인범을 조사한 쿠도의 통계에서는 본부살해범의 비율이 63%로 고쿠분의 것보다도 높았다. 더욱이 고쿠분은 위의 【표 2】의 경우, 조선인 여성의 남자 100에 대한 살인범 비율에서 본부 살해범을 빼면 살인 비율이 오히려 내지 부인보다도 낮은 비율이라고 하면서, 조선은 여성의 살인 범죄 중에서 남편 살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결론을 내린다.

결국 고쿠분과 쿠도 모두 통계라는 ‘산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남편 살해’ 범죄를 조선 “특유”의 여성 범죄로 자리매김하였다. “조선여자의 본부살해범은 범죄 통계학상에서 보아 조선 특유의 범죄로서 타에 비할 바가 없다.”²²⁾는 쿠도나 “일본 내지에서는 특별 범죄의 통계가 없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내지에서는 아주 드문 일에 속하는 범죄가 조선에는 아주 많다는 점에서 남편 살해는 조선 특유의 범죄”라는 고쿠분의 논의가 그것이다. 아울러 고쿠분의 논리는 “조선가족제도의 결함과 그것이 초래한 폐해 및 조선 부인의 성질을 가장 명쾌하게 논단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1927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조사 자료집, 『朝鮮の人口現象』에 거의 그대로 전재됨으로써 담론적 헤게모니를 획득하였다.²³⁾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통계상 수치는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통계 수치의 사실 유무와는 별도로, 통계를 만드는 방식은 다분히 정치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의 경우, 전체 형법범이 많으면 살인 비율은 그만큼 내려갈 수밖에 없다. 조선은 내지보다 전체 범죄 수가 현격하게 적기 때문에 살인이 내지에 비해 그 수가 상당히 적더라도 그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즉 범죄자와 살인범은 내지가 조선 보다 현격히 많음에도

22) 工藤武城, 「朝鮮特有の犯罪本夫殺害犯の婦人科學的考察(六)」 『朝鮮』 제218호, 1933. 7. 105쪽.

23) 조선총독부 편, 조사자료 제22집 『朝鮮の人口現象』, 1927. 12, 302~308쪽.

불구하고, 그것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 채 전체 범죄자 대 살인범이라는, 이러한 방식의 비율적 통계는 중립적인 것이라 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여성 살인범 중 본부 살해의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높은지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시한 통계 수치상의 해석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석적 비약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²⁴⁾

사실상 ‘통계’는 ‘지식’과 ‘통치’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만들어진 근대적 통치 방식의 하나였다. 수, 중량, 척도의 용어를 이용하여 국토, 주민 수, 산업 등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아는 것이 합리적인 통치 기술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 통계였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정치를 위한 유익한 최신의 지식으로서 받아들여진 “정치산술”은 인민을 통치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다.²⁵⁾ 일본 역시 근대국가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구 문명을 수용하였고 그 중 통계도 ‘문명’의 필수 항목이었다. 제국 일본의 통계를 이용한 통치는 자국뿐만 아니라 식민지에 적극 이용되었던 것이다.²⁶⁾

더욱이 ‘오리엔탈리즘은 산술적이며 분석적이다’는 사이드(Edward Said)와 ‘수는 식민지 정부의 담론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는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의 통찰력 있는 지적은 식민지에서 통계가 가진 정치적 의미를 극명하게 드러낸다.²⁷⁾ 식민지에서 수에 의해 표현되는 식민지

24) 이 논문이 식민지시기 이루어진 통계가 허위라거나 통계가 가진 사료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통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나 어떤 사안에 대한 통계 수치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읽기 필요하다는 것이다.

25) 阪上孝, 『近代的統治の誕生-人口・世論・家族』, 岩波書店.

26) 박명규 · 서호철, 2003, 『식민권력과 통계: 조선총독부의 통계체제와 센서스』, 서울대학교출판부.

27) Arjun Appadurai,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 차원현 · 채호석 · 배계화 옮김, 2004, 『고베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2~238쪽.

적 ‘재현’, 즉 ‘수’에 의한 해석은 식민지 관료주의 담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식민지 관료의 분류하는 시선은 통계를 이용하여 이국적 정서를 창출하고 그것을 본질화 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들은 ‘수’에 입각한 재현이야말로 차이의 병리학을 치유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 점에서 ‘수’로 재현되는 식민 통치자의 통계는 상당부분 보편적이거나 중립적이기 어려웠다. 이는 베일을 쓴 여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성적인 차별과 여성에 대한 지배가 보편적이라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단언은 숫자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기술적 일반화로, 거기에는 분석적 비약이 존재할 수 있다.²⁸⁾

더욱이 산술적 통계에 비교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정치적 계몽의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 비교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서구적 문명, 즉 ‘근대적 모랄’이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그것이 내지 일본이기도 하였다. 서구나 일본이 비교의 척도가 됨으로써 그들에 미치지 못하는 통계는 조선의 ‘야만성’과 ‘미개성’을 드러내 주는 지표가 되었다. 예컨대 1935년 『신동아』에 실린 「數字의 悲劇: 國勢調査에 나타난 朝鮮의 文盲率」이라는 글은 ‘통계와 비교’가 가지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 글에서 필자는 “조선의 문화정도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알고자 하면 다른 나라의 문맹률과 우리의 것을 비교하여 볼 것이다.”고 하면서 “조선 사람이 가진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사실 중의 하나”²⁹⁾ 문맹률을 꼽고 있다. 따라서 통계와 비교에는 이미 가치가 개입될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계몽의 정치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28) Chandra Talpade Mohanty, 2004, *Feminism without border*, Duke University Press, 문현아 옮김, 2005, 『경계없는 페미니즘』, 여이연, 58~59쪽.

29) 吳天錫, 「數字의 悲劇: 國勢調査에 나타난 朝鮮의 文盲率」, 『신동아』 5권 2호, 1935. 2.

자명하고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강점인 통계가 가진 힘은 결코 적지 않았던 듯하다. 남편살해 사건을 조선인 특유의 범죄로 바라보는 이러한 방식의 논리와 논증은 조선인 지식인들에게 거의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남편살해 사건을 보도하거나 분석하는 조선의 언론들이나 조선 지식인들의 논설 역시 이를 조선 특유의 범죄로 자명시 하였다. 『조선일보』는 1929년 10월 24일 「소위 조선 특유의 범죄문제」라는 논설을 사설에 실으면서 이를 “소위 조선 특유의 범죄”로서 “타국의 국민에게는 흔히 보지 못하는 일종의 특수 현상”으로 규정하였다.³⁰⁾ 이는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살해 문제를 특집으로 다룬 「분부살해의 사회적 고찰」에서 김정실 기사는 과부의 영아살해와 함께 이를 “조선에서 여성범죄로 특수성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쿠도의 논의를 거의 그대로 게재하고 있었다.³¹⁾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문화운동이 가진 성격과 관련을 가진다. 1920, 30년대 민족주의적 지식인들은 조선이 식민지로부터 기사회생하기 위해서는 실력 양성을 위한 “신문화건설”, 즉 ‘현대적 신문명’의 수립을 제창하였다.³²⁾ 이들이 주창한 신문명은 서구 제국과 일본이 그 모방

30) 「사설 소위 조선 특유의 범죄문제」, 『조선일보』 1929. 10. 24.

31) 김정실, 「분부살해의 사회적 고찰(1)」, 『동아일보』, 1933. 12. 9. 이 기사는 1933년 12월 24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그의 논지는 쿠도의 것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1933년 12월 10일 「분부살해의 사회적 고찰(2)」에서는 【표 2】의 쿠도의 분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32) 『동아일보』와 『개벽』을 필두로 신문화건설을 위한 문화운동을 제창하였다. 동아일보의 1920, 30년대 문화운동의 슬로건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조선인의 민조 의식 각성과 단결이며 둘째는 구습개혁과 신문화 수용이다.(95) 동아일보는 1920년대 이후 구래의 전통문화를 ‘구관누습’이라하여 비판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왔다.(97) 『개벽』 1920년 6월 이돈화의 글 「조선 신문화건설에 대한 도안」은 우수열패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劣者が 된 조선인의 기사회생의 유일한 방법은 실력을 기르는 것이라 주장하고, 실력양성을 위한 신문화건설을 제창하였다. 신문화의 건설방법으로 1) 신사상, 신지식의 수용과 보급, 2) 구습의 개혁, 즉 풍속개혁 3) 산업의 진흥이 주로 제기되었다(박찬승, 2007, 『민족주의의 시대-일제하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식민주의자들이 일본의 문명적 우위를 내세워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였다면,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자신 문화의 낙후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문명적인 진보를 위해 ‘구습’을 타파하여 새로운 문화를 건설해야만 하였다. 서구적 근대성에 비추어 이들 문화적 민족주의자들에게 강제결혼 및 조혼은 조선의 구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타파해야만 할 “구관누습”이자 “폐습”이었다. 거기에서 남편살해범 여성을 조혼의 대표적인 표상으로 내세움으로써 그들을 매개로 하여 대중을 문명화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포섭해 나갔다.³³⁾ 서구의 계몽 논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제국주의 논리의 수용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서구 문명의 ‘보편성’에 압도되어 결국 식민주의와 동일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었었던 것이다.³⁴⁾

II. ‘독부(毒婦)’와 ‘소부(少婦)’의 교차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에서 남편 살해라는 범죄를 저지른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하였는가. 이들 시선에 의해 그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었는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재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민족주의』, 경인문화사, 94~99쪽).

33) 김영선, 2010, 「결혼·가족담론을 통해 본 식민지근대성의 구성요소와 특징」, 『여성과 역사』 13집, 149쪽.

34) 정용화, 「1920년대 초 계몽담론의 특성」, 정용화·김영희 외 지음, 2008, 『일제하 서구문화의 수용과 근대성』, 해안, 21~28쪽.

1. 독부

우선,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은 “성품이나 행동이 몹시 악독한 여자”를 지칭하는 “독부”로 형상화되었다.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즉 인륜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이것은 어찌면 당연했다. 그러나 그들이 독부가 되는 방식은 식민지적 재현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에서 특히 범죄를 저지른 여성의 독부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조선 여성을 ‘성애화’된 존재로 묘사하는 것이었다. 남편 살해 사건은 특히 여성의 처정과 관련하여 논의됨으로써, 그들의 독부로서의 면모는 더욱 강화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남편살해 사건에 가장 먼저 주목한 고쿠분은 조선 여성에게 성적인 문제가 과도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역시나 통계를 통해 입증하였다.

【표 4】 내선 부녀별 외설죄 비율

| 연차 | 내선 부녀별 | 형법범 총인원 | 외설죄 총인원 | 형법범 총인원에 대한 외설죄 비율 |
|-------|--------|---------|---------|--------------------|
| 1911년 | 내지인 | 5,236 | 94 | 0.02 |
| | 조선인 | 460 | 245 | 0.53 |
| 1912년 | 내지인 | 4,691 | 89 | 0.02 |
| | 조선인 | 575 | 265 | 0.46 |
| 1913년 | 내지인 | 4,291 | 82 | 0.02 |
| | 조선인 | 679 | 250 | 0.37 |
| 1914년 | 내지인 | 3,356 | 60 | 0.02 |
| | 조선인 | 788 | 281 | 0.36 |
| 1915년 | 내지인 | 2,903 | 69 | 0.02 |
| | 조선인 | 866 | 304 | 0.35 |
| 계 | 내지인 | 20,477 | 394 | 0.02 |
| | 조선인 | 3,368 | 1,345 | 0.40 |
| 평균 | 내지인 | 4,095.4 | 78.8 | 0.02 |
| | 조선인 | 673.6 | 269.0 | 0.40 |

| | | | |
|-------|------------------------|--------------------|----------------------------|
| 내선부인별 | 1913년 말 현재 유부의 여자인구 | 1913년 중 외설범 총인원 | 유부의 여자 10만명에 대한 외설범의 비율 |
| 내지인 | 9,144,727 | 82 | 0.897 |
| 조선인 | 3,805,362 | 250 | 6.570 |

그의 통계에 의하면, 간통과 이어질 수 있는 외설죄³⁵⁾는 일본 내지보다 아주 많은 수를 나타낸다. 그는 “간통죄에 대해 내선부인의 범죄수를 비교하니 조선부인의 범죄 수는 내지부인이 저지른 총수의 3배 이상이다. 만일 이것을 각기 부인 인구에 비례하여 비율을 산출하면 7배 이상이 되는 놀랄 만큼 많은 수”³⁶⁾라는 분석을 한다. 조선에는 간통과 관련된 범죄가 현격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남편 살해라는 범죄로 이어졌다는 논리이다. 1911년부터 15년까지 살해 원인을 분석한 아래의 통계를 이용하여 그의 주장은 더욱 정교하게 입증되었다.

【표 5】 본부살해 원인별(1911-1915년)³⁷⁾

| 본부 살해 원인 | | | 범죄수 |
|----------|---------------------------------------|-------------------|-----|
| 1 | 간통의 결과 | 1) 간부와 동루할 목적으로 | 70 |
| | | 2) 본부와외의 동루를 싫어하여 | 5 |
| 2 | 혼인 전 사통한 결과 | 1) 정부와 동루할 목적으로 | 3 |
| | | 2) 본부와외의 동루를 싫어하여 | 2 |
| 3 | 남편의 학대 또는 정이 없음을 한하여 | | 19 |
| 4 | 남편의 魯鈍, 연장, 빈천, 병약 또는 용모가 추악한 것을 싫어하여 | 1) 다른 데로 개가하고자 | 4 |
| | | 2) 이혼을 요구할 수 없어 | 9 |

35) 간통죄만에 관한 범죄통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설죄의 숫자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본 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만을 계상한 것이다. 國分三玄, 1917. 3, 「조선부인의본부살해」, 『조선회보』, 9쪽.

36) 國分三玄, 「朝鮮婦人の本夫殺害」, 『朝鮮彙報』, 9쪽.

37) 國分三玄, 「朝鮮婦人の本夫殺害」, 『朝鮮彙報』, 15쪽. 본 【표】 1, 2 중 간부 등과 공모하여 죄를 범한 자 48명, 단독범인 자 32명이라고 한다.

식민지 조선의 “본부살해(本夫殺害)” 사건과 재현의 정치학

| | | | |
|-----|---|---------------------------|-----|
| 5 | 남편이 유약하여 정욕을 만족시킬 수 없다 | 1) 또한 학대에 분노하여 | 2 |
| | | 2) 다른 데로 개가하고자 | 3 |
| | | 3) 남편살해하면 실가로 돌아갈 수 있다 생각 | 2 |
| 6 | 몸과 정신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실가를 그리워한 나머지 남편을 죽이면 실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 | 8 |
| 7 | 남편의 병독에 감염되어 그 몸의 불행을 비판하여 남편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하기에 이른 것 | | 1 |
| 총 계 | | | 128 |

위의 표에 의하면, 남편 살해의 원인으로 ‘간통’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된 1과 2의 통계 숫자는 총 80명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남편 살해는 주로 “색정관계에서 기인”하고 이러한 자는 “모두 침을 뱉어 마땅한 무리로서 조선인 부녀자가 어려서부터 이미 색정이 발달하고 지조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³⁸⁾ 고쿠분의 분석은 조선 여성을 과도하게 성애화 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즉 ‘간통’은 남편 살해범인 ‘여성’을 ‘독부’로 재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다.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하면 자질 면에서도 그녀들은 다분히 문제적인 성품의 소지자였다. 당시 감옥에 구금 복역 중인 범인 104명을 조사한 그의 분석에 의하면, 성질이 양호, 즉 온순하거나 영리하다고 인식되는 범인은 전체의 22%에 불과할 뿐, 나머지 78%는 모두 방종하거나多情 혹은怠惰 등 불량한 자였다. 더욱이 이들 여성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20세 이하의 어린 범인이 다수”라는 점을 들어, 이 범죄가 “지식과 생각이 잔박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⁹⁾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 교수인 야마다 가즈타카(山田一隆)의 조선

38) 國分三亥, 「朝鮮婦人の本夫殺害」, 『朝鮮叢報』, 18~19쪽.

39) 國分三亥, 「朝鮮婦人の本夫殺害」, 『朝鮮叢報』, 16~18쪽.

여성에 대한 시선 역시 코쿠분과 거의 동일한 맥락에 있었다. 그는 조선의 “풍속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특징적 범죄의 하나”가 “간통죄 및 살인죄”라고 하면서, 이 둘이 서로 별개의 범죄가 아닌,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간통죄를 범하고 그 결과 본부를 살해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살인 범죄가 많다는 것이다.⁴⁰⁾ 나아가 이는 조선 여성을 ‘잔인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 본질화시키는 논의로 발전하였다.

살인 방법은 잔인이 극에 달하여, 아마 세계 중 부녀의 사형수가 많은 나라는 달리 그 예가 없다고 한다. 이들은 실로 조선에 있어서 인정, 풍속이 그러한 바로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도장 시설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길가, 하천가에서 소와 돼지를 도살한다. 그 때 선혈이 흐르는 것을 하류의 부녀는 이것을 냄비에 받아, 입을 대고 그 생피를 痛飲하는 풍습이 있다고. 이러한 풍속 아래에서 다년간 길러진 조선의 부인들은 피 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자연히 잔인한 특성을 가지기에 이른 것이다.⁴¹⁾

위의 글에 따르면, 조선 여성의 ‘잔인성’은 조선 사회의 ‘원초적 야만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도축 시설이 아닌 길가나 하천가에서 소와 돼지를 잡는’ 조선의 야만적 풍속, ‘금방 잡은 가축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생피를 들이키는’ 조선 여성의 ‘원시성’이 그것이다. 즉 불결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조선 사회는 여성의 잔인한 특성이 발원하는 지점이었다. 고쿠분 또한 남편 살해범을 지방별로 분류하고 또 각도의 인구별 비례를 살펴, “문화가 미개한 지방”에 많다고 단정 짓는다.⁴²⁾ 이들 고쿠분과 야마

40) 山田一隆, 「朝鮮的特徵的犯罪」, 『경무회보』 1921. 3. 190호, 3쪽.

41) 山田一隆, 「朝鮮的特徵的犯罪(二)」, 『경무회보』 1921. 4. 191호, 25~26쪽.

42) 國分三亥, 「朝鮮婦人の本夫殺害」, 『朝鮮彙報』, 1917. 3. 10쪽. 고쿠분에 의하면, 남편을 살해한 범죄자는 황해도가 가장 많고 평안남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가 그 다음이다. 이에 근거하여 그는 남편살해범이 문화가 미개한 지방에서 많다고

다와 같은 일본인 관료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조선 문화의 후진성을 적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제국의 상상의 지리 안에 존재하는 식민지 조선 모습이었다.43) 식민 지배는 단지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식민자의 확신에 근거하여 사명감으로 무장한 자기 정당화의 원칙이 작동된다. 문화적으로 식민지인들은 자력으로 구래의 악습과 미신적 사고, 도덕적 불량 상태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44) 이를 통해 제국 일본의 관리와 지식인들은 문명의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이 야만적인 식민지 조선에서 실천해야 할 정당성을 확보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살해범인 여성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은 일본인 관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당시 이를 보도한 조선인 언론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독부”로 재현된 여성들의 범죄상을 보도한 대표적인 기사들이다.

총각과 共謀하고 본부 斫殺한 毒婦, 여자는 잡히고 남자는 도망해

지난3일 그동리사는 박○○을 참살하고 종적을 감추어버렸다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면 정모는 아즉 총각의 몸으로 박모의 안해 열여덟살 먹은 계집과 피차에 이전부터 비밀한 관계를 맺어오며 “본부를 죽이고 두사람이 가차 살자”는 의론을 향상하여 오든 바 돌연히 그 자는 그 날밤에 독기를 들고 드러가서 자고있는 박씨의 머리를 꽤여 그 자리에서 즉사케하고 자취를 감추었는데 당시 박씨의 안해는 즉시 자기 팔촌 형의 집에 가서 자기 남편이 자기 손으로 독기를 가지고 머리를 찍어 죽었다고 말하야 매우 소동을 일으켜 경찰서에서 엄중히 취조한 결과 전기와 가튼 사실이 판명되었는데 아직 그 간부는 잡히지 않았다더라45)

주장한다.

43) 강상중, 임성모 역, 1997,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44) Jürgen Osterhammel, 1995, *Kolonialismus-Geschichte, Formen, Folgen*(박은영·이유재 옮김, 2006, 『식민주의』, 역사비평사).

醜行發覺된 줄알고 本夫殺害한 毒婦

(신의주) 자기의 추행이 남편의 아는 바가 되자 남편을 죽이고 간부와 함께 시체를 강에 버렸든 간부부- (중략) 범죄내용인즉 최송화는 본부잇는 몸으로서 김과 관계를 맺어오든바 작년8월19일 밤 12시경 남편이 술이 취하여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집에 돌아왔으므로 이를 나무랬든바 남편은 도리혀 “서방질하는 녀은 보기신타”고 꾸짖으므로 이에 자기의 추행이 발각된 것을 두려워하여 철퇴로 남편 머리를 세 번이나 갈겨 죽인후 마침 그 때 찾아온 간부 김영준과 함께 남편이 물에 빠져 죽은 것같이 하자고 의론하고 20일 새벽 4시반 화경천에 시체를 버렸든 것이다.46)

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성들의 남편 살해는 간통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간부와 공모하여 남편을 살해하거나, 간통을 한 자신의 추행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하여 남편을 죽이는 등 거의 대부분이 ‘치정’과 관련되었다. 더욱이 이들의 범죄 행위는 극악무도하였다. ‘자고 있는 남편의 머리를 도끼로 찍어 죽인다’거나 ‘철퇴로 남편의 머리를 세 번이나 갈겨 죽였다’든지, ‘남편을 낫과 몽둥이로 때려죽인 후 방화하고 도주한 독부’47)라든지 혹은 ‘잠을 자고 있는 시모의 귀에 꿇는 참기름을 부은 며느리’, ‘끓는 물을 퍼부어 본부를 죽인 독부’48) 등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冷血漢’ 그 자체로 표현되었다. 간부와 공모하고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은 “야만적 무지가 낳은 성적 야합에서 생기는 참극”49)이라는 『조선일보』의 기사 또한 거의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조선 여성은 과도하게 자신의 성성(sexuality)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기까지 하

45) 「총각과 共謀하고 본부 斫殺한 毒婦」, 『동아일보』 1924. 12. 10.

46) 「醜行發覺된 줄알고 本夫殺害한 毒婦」, 『동아일보』 1936. 3. 15.

47) 「本婦를 斫殺 放火하고 逃走한 毒婦」, 『동아일보』 1927. 5. 3. 기사의 내용상, 신문 제목의 ‘本婦’는 ‘本夫’의 오타로 보임.

48) 「끓는 물퍼부어 本夫죽인 毒婦 求刑대로 十年判決」, 『매일신보』 1937. 2. 2.

49) 林耕一, 「조선의 범죄상」 6, 『조선일보』 1933. 2. 10.

는 여성들로 묘사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시선은 문명의 전파자를 자처한 제국의 관료와 문명화라는 지상과제에 압도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공통된 것이었다. 이들에게 이러한 여성들의 존재는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적 조선 사회의 단상을 드러내는 징표가 되고 있었다. 결국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색정’과 ‘잔인’은 그녀들을 ‘독부’로 재현하는 동시에, 이들의 존재는 조선 사회의 비문명화 된 ‘미개성’과 ‘야만성’을 드러내는 지표였다. 이들의 논의는 여성을 통해 식민지의 문화를 열등하고 주변적인 것으로 위치시키는 문명 대 야만의 도식 구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전형성을 보여 준다.

2. 소부

한편,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재현되는 또 다른 방식은 “소부”였다. ‘결혼한 어린 여성’ 즉 ‘어린 아내’를 의미하는 소부란 용어는 식민지시기 신문지상을 가장 빈번하게 장식하던 주요 키워드 중의 하나였다.⁵⁰⁾ 소부와 관련된 기사의 대부분은 어린 나이에 결혼한 여성들의 자살이나 도주, 그리고 그들이 자행한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한 것은 단연 소부의 “자살” 기사였지만, 그녀들이 행한 “방화”나 “본부살해” 등의 범죄도 주요한 단골 메뉴였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이 어린 아내들의 범죄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50) 1924년부터 1940년까지 『동아일보』에는 소부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가 거의 900여건에 이른다. 눈에 띄는 것은 그 이전에는 기사 제목에 ‘소부’라는 용어가 거의 보이지 않다가 1924년 5월 17일부터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1924년 총 9건에 불과하던 것이 해가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다.

17세 少婦 媿家에 四次放火

남편 실코 친정에 가고싶혀, 早婚이 나흔 犯罪

안옥진(17)에 대한 방화사건은 (중략) 지금으로부터 4년전 피고가 14살 되든 음력 4월중에 개성군 영북면 월고리 49번지 진병하의 아우 진병은에게 시집을 가서 이래 동거하야 왓스나 남편이 무섭기만 하고 친정에 가고 싶흔 생각은 간절하야 금년 4월 6일에 시가에 불을 노아 업시하면 친정에 가게되려니 하는 어린 생각으로 창고에 불을 노흔 것을 비롯하야 전후네 번이나 계속하야 불을 노하 손해도 적지아니하얏다는 것으로 범죄의 공기가 근본 조혼의 폐해에 잇는 것이라더라.⁵¹⁾

早婚의 弊害!

幼少의 苦痛을 못참어 男便絞殺한 소부

남편의 강렬한 성욕에 견디지못하야 살인죄를 범하고 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우는 소녀가 있다. 범인은 순천군 순천면 용흥리 이희옥(22)의 처차길조(18)로서 그는 15세에 남편을 마자 결혼후 금년 1월까지 본가에 돌아가 있다가 1월 16일 다시 남편에게로 갔스나 도모지 남편의 요구에 견디낼 수 업서 고민하던 8때 17일 남편이 매사냥을 하야 평을 잡아다가 친구들과 술을 먹고 취해자는 틈을 타서 남편을 교살한 것이라 한다. 이는 단순히 남편이 업스면 자기의 고통을 업슬수 있을까 한 생각으로 그리된 것으로 조혼의 무서운 결과 그리된 것으로 조혼의 무서운 결과를 말하는 사실이라 한다.⁵²⁾

집이 불타 없어지면 무서운 남편이 없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리고 남편을 죽이면 남편의 성적인 요구에 응해야 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어린 생각”에 시가에 방화를 하거나 남편을 교살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들 기사에서 범죄를 저지른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인 “소부”

51) 「17세 少婦 媿家에 四次 放火」, 『동아일보』 1928. 7. 24.

52) 「早婚의 弊害! 幼少의 고통을 못참어 男便絞殺한 소부」, 『동아일보』 1933. 2. 26.

에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절대적인 기준만이 내재된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범죄를 저지른 여성들에 대한 일종의 ‘연민’이 들어있었다. 그 연민은 처음부터 악독해서가 아니라, 그녀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그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한 사회 문화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조혼’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문에 나타난 원인 분석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이미 일찌감치 일본인 관료들은 이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인 관료였던 고쿠분이나 야마다의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역시 불합리한 조선의 혼인제도를 남편 살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였다.⁵³⁾ 특히 범죄의 원인을 조선 사회의 결혼 습속과 남편에게서 구하여, 소부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일본인 의사 쿠도에게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남편 살해라는 범죄의 원인을 “조선 특유의 풍속, 습관”에서 찾는 쿠도에게,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하는 너무 이른 결혼, 시부모나 남편의 학대, 남편과의 정이 없는 결혼 생활 등이었다.

분부살해라는 이 여자 범죄가 특유한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 없고 오직 조선에만 이것이 있는 원인은 범인의 개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 조선 민족의 여자만이 이러한 영악한 소질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상의 연구에 의해 명백하다. 이 사회 병의 증상을 가져온 원인은 조선특유의 풍속, 습관 즉 특종의 결혼방식, 조혼, 이혼의 불가능, 여자의 인격무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다.⁵⁴⁾

53) 國分三玄, 「朝鮮婦人の本夫殺害」, 『朝鮮彙報』, 15쪽.; 山田一隆, 「朝鮮の特徵的犯罪」, 『경무회보』 1921년 3월호 190호, 3쪽.

54) 工藤武城, 「朝鮮特有の犯罪本夫殺害犯の婦人科學的考察(完)」, 『朝鮮』 제219호,

더욱이 그는 살해범인 처와 살해당한 남편의 성격을 분석하여, 범죄가 일어난 원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살해당한 남성들은 정신, 신체 및 성욕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보통의 생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전체의 5.2%에 불과”하고 “병적 이상자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 중 정신상의 결함이 51.7%로 가장 많고, 성욕 이상이 그 뒤를 이어 34.5%를 차지한다. 그리고 신체상의 결함이 가장 적은 8.6%였다.⁵⁵⁾ 쿠도는 특히 남편들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범죄를 저지른 여성에 대해 무한한 동정을 드러낸다. 고쿠분 또한 당시 수감 중인 104명의 살해범 남편의 성질 및 소행을 분석한 후, 살해당한 남편들의 “그 반 수 이상은 선량하지 않은 자로서 본 죄 발생을 유발한 원인인 경우가 많다.”⁵⁶⁾고 하였다. “범죄자 및 그의 남편은 일반적으로 성질이 불량한 자가 다수”⁵⁷⁾라는 고쿠분의 논의와 살해당한 남편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부분에서는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그런 반면 범죄자 여성에 대한 시각에는 일본인 관료들과 쿠도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보인다. 조선 부인의 지능이 아직 발달하지 못하고 잔인성을 띤다는 일본인 관료 고쿠분이나 야마다의 논의는 쿠도에게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쿠도는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이 자란 환경, 범인의 기왕의 질환, 신체, 용모, 성질 등을 분석하면, 그 여성들에게는 범죄를 저지를 만한 특이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런 만큼 조선에서 남편 살해 범죄는 여성들에게 불량한 소질이 있어서가 아닌, “민족적, 지방적 요인”에 의한 “기회성 범죄”라는 것이다.⁵⁸⁾

1933. 8, 120쪽.

55) 工藤武城, 「朝鮮特有の犯罪本夫殺害犯の婦人科學的考察(六)」 『朝鮮』 제218호, 1933. 7, 111쪽.

56) 國分三玄, 「朝鮮婦人の本夫殺害」, 『朝鮮彙報』, 21쪽.

57) 國分三玄, 「朝鮮婦人の本夫殺害」, 『朝鮮彙報』, 21쪽.

58) 工藤武城, 「朝鮮特有の犯罪本夫殺害犯の婦人科學的考察(六)」 『朝鮮』 제218호,

【표 6】 범죄인 남편의 성질 및 소행⁵⁹⁾

| 범죄인 남편의 성질 및 소행 | | 범인수 |
|-------------------------------------|----------------|-----|
| 1. 항상 도박 혹은 음주에 취하고 또는 遊惰하여 | 正業을 살피지않는다. | 22 |
| | 항상 쟁론을 한다. | 4 |
| | 조폭 행위를 한다. | 17 |
| 2. 短慮, 음험 또는 박정하여 항상 처를 학대한다. | | 10 |
| 3. 인격이 비천하여 교우하지 못한다. | | 1 |
| 4. 거의 강도로서 직업을 가지지 않고 또 처를 학대한다. | | 1 |
| 5. 성질이 온순하고 음주벽이 없을지라도 | 1) 유약하다. | 4 |
| | 2) 정신에 이상이 있다. | 2 |
| | 3) 연로하다. | 3 |
| | 4) 암우하다. | 1 |
| 6. 질박하여 주벽이 없고 또 소행이 선량하여 가업에 정려한다. | | 39 |

이와 같은 분석에 의해 ‘소부’는 ‘독부’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로 환원된다. 이들은 ‘연약’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성’이 아주 약한 여성으로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감당하기 어려운 결혼생활이 범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여성에게는 조선 사회의 일종의 ‘희생자’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다. 특히 문명화되지 않은 조선의 결혼 습속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은 조선 사회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소부”라는 용어에는 문명에 뒤떨어진 조선의 사회적 습속에 대한 비판이 함축되어 있었다. 결국 ‘소부’ 또한 ‘독부’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후진성’으로 귀결되었다. ‘독부’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식민지배의 정

1933. 7, 111쪽.

59) 國分三亥, 「朝鮮婦人の本夫殺害」, 『朝鮮叢報』, 21쪽.

당성을 확보하는 식민지의 미개성, 야만성의 논리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담론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남편 살해범 여성을 재현하는 ‘독부’와 ‘소부’라는 그 상반된 이미지는 서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이 양자는 다시 ‘소독부’의 모습으로 혼종되어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은 ‘극악한 독부’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고, ‘가련한 소부’이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인 관료인 고쿠분과 아마다의 경우에는 남편살해범 여성을 독부이기도 하고 소부이기도 한 존재로 재현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독부성을 구성하는 ‘간통’도 ‘조혼’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독부’는 ‘소부’로 다시 환원되고 있었다.

분부살해범죄의 원인 중 夫가 幼弱하여 정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불만으로 생각하는 자, 혹은 범인 자신의 심신이 발달하지 않아 실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자가 있는 것은 모두 조선인에게 조혼의 풍이 있다는 일 예증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의 연령, 성질, 건강 등에 불만을 품는 것은 조선인 사이의 혼인제도가 아직 발달하지 않아, 결혼이 家長 주재 하에 이루어지고, 당사자인 본인은 배우자의 선택에 대해 거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⁶⁰⁾

고쿠분에 의하면, 남편이 정욕을 만족시켜주지 못해 발생한 치정 때문이거나,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일어나는 남편살해 사건의 경우에는 조선의 혼인 습속인 조혼이 그 원인 제공자였다. 더욱이 결혼이 “배우자의 선택”이 아닌, ‘가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여성들이 자신의 남편을 나이나 성격, 건강 등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인으

60) 國分三亥, 「朝鮮婦人の本夫殺害」, 『朝鮮叢報』, 15쪽.

식민지 조선의 “본부살해(本夫殺害)” 사건과 재현의 정치학

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즉 “혼인제도가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라는 그의 언급에서 나타나듯이, 때 이른 결혼이나 결혼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혼인 제도의 ‘낙후성’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는 아마다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에 의하면 조선의 풍속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특징적 범죄가 “간통죄 및 살인죄”인데, “그 원인의 대부분은 결혼제도에 기반한 것으로, 가령 조혼, 축첩, 강제결혼, 매매결혼 등의 폐해로부터 간통죄를 범하고 그 결과 본부를 살해하기에 이르러 살인죄를 구성하는 것이 많다”고 한다.⁶¹⁾

아래의 조선 지식인들의 논의 역시 당시 조선 사회에서 남편 독살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조선의 여성이 자행하는 방화, 간통뿐만 아니라, 가장 극악한 범죄인 남편 살해나 영아살해 조차도 여성으로 하여금 “때 이른” 결혼을 하게 한 조선 사회의 습속이 문제였다.

남자나 여자를 물론하고 범죄의 동기가 色 즉 性문제에 基因되는 것이 만케치마는 朝鮮여성의 범죄는 그것 그대로 性문제에서 한거름도 나아가지 못하였다. 前掲 통계중에서 살인, 猥褻 姦淫, 竊盜, 放火 注射取締 규칙 위반 등이 次第로 多數인 것을 보았거니와 竊盜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色에서 출발되었고 가장 重刑으로 되어있는 살인, 放火에도 痴情 관계의 것이 대부분이다. 살인에는 早婚이 원인되어 本夫를 毒殺하고 불의의 結晶인 嬰兒를 살해한 것이며 放火는 小婦怨女들의 所行이 태반이다. 이것은 단순히 朝鮮여성의 잘못이라고 嚴罰주의로 臨할것도 아니며 이 사회제도 (더욱이 舊도덕의 因襲)에 모순이 만흔만치 (중략) 魔醉적 장치의 자본주의 문명침단에서 헛되히 춤추는 朝鮮여성도 스스로 覺醒하는 바 이 서야 할 것이다.⁶²⁾

61) 山田一隆, 「朝鮮의 特徵的 犯罪」, 『경무회보』 1921년 3월호 190호, 3쪽.

62) 梁在厦, 「嬰兒殺害의 慘變, 犯罪上으로 본 朝鮮女性」, 『삼천리』 제4권 제4호, 1932. 4. 1.

내가 다녔 신문기자를 다녔드니 (중략) 재판소나 경찰서에 출입하며 여자 범죄의 실례를 보면 거의 전부가 조혼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린 여자나 만혼 남자를 어디서 남편을 원수가치 미워하는 끄테는 밥에 양재물을 타서 먹이고 귀에 기름을 끄려 부러하는 등 무서운 살인범도 조혼 때문이요. 어린 여자가 식집을 가서 식부모와 남편에게 학대를 당할 때마다 그 단순한 머리에 (중략) 집에 불을 노아서 이 집이 타버리이면 집은 이산을 하고 나는 친정으로 가게 되겠스니 그런면 그 무서운 식어머니의 학대와 흉한 남편의 손에서 버서나게 되리라고 불을 노호니 방화범도 조혼 때문에 생기는 것이요 또 절도도 역시 조혼 때문에 (중략) 간통 역시 조혼 때문에 내외불화로 다른 남자를 사모하게 되어 만히 생기는 줄 압니다.⁶³⁾

위의 논의는 “본부살해 범죄의 원인 중 남편이 유약하여 정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불만으로 생각하는 자, 혹은 범인 자신의 심신이 발달하지 않아 실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자가 있는 것은 모두 조선인에게 조혼의 풍이 있다는 일 예증”이라는 고쿠분의 논의와도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⁶⁴⁾ 결국 여기가 바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어린 부인’, ‘어린 부인의 흉악한 범죄’ 그것이 함께 발 딛고 서 있는 지점이였다. ‘소부’와 ‘독부’라는 이 두 용어는 마치 남편 살해범을 구성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았다. 독부는 소부의 ‘끔찍성’을, 소부는 독부의 ‘가련성’을 부추키고 강화시키는 상호 작용을 하였다. 즉 이들은 상반된 이미지가 아니라 서로의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분리되지 않는 의미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소위 조선 “특유”의 사회적 습속이라는 “조혼”이 가진 ‘비극성’은 최고로 극대화될 수 있었다.

63) 「早婚에 關한 座談會」, 『朝鮮農民』 4권 9호, 1928. 12, 32쪽.

64) 國分三亥, 「朝鮮婦人の本夫殺害」, 『朝鮮叢報』, 15쪽.

맺음말

이 논문은 식민지시기 남편 살해라는 범죄가 조선 특유의 여성 범죄로 만들어지는 방식과 거기에 내재된 식민지 정치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일본인 관료 및 의사, 식민지 조선의 언론 및 지식인들에 의해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었으며, 거기에 내재된 함의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식민지시기 남편을 살해한 여성을 재현하는 용어인 ‘독부’와 ‘소부’는 서로 다른 의미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었다. 남편 살해라는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한편에서는 조선의 사회적 인습의 ‘희생자’인 ‘소부’이자 동시에 “울트라 예로”, “울트라 그로”의 ‘독부’로 그려졌다. 언뜻 정반대로 보이는 이 두 용어는 서로 다른/분리된 의미망을 형성하는,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과도한 성애와 잔인성으로 표현된 독부는 조선 여성의 비문명화 된 원시성/야만성을, 조선의 때 이른 결혼 관습에 대한 비판이 내재된 ‘소부’는 이른바 조혼이 가진 비문명적 낙후성을 상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용어는 상호 교차됨으로서 식민지 조선의 후진성의 논리를 더욱 강화하였다. 기사에 따라서는 독부성만을 강조하고, 소부성만을 드러내는가 하면, 그 둘이 공존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식민지 조선이라는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소부와 독부라는 용어가 가진 의미의 교차는 이 사건의 비극성을 한층 고양시키는, 마치 남편 살해범 여성을 구성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었다. 이로써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어린 부인’, ‘어린 부인의 흉악한 범죄’는 그 원인으로 지목된 ‘조혼’이 가진 ‘야만성’과 ‘후진성’을 최고로 극대화 시킬 수 있었다.

둘째, 남편살해 사건은 일본인 관료들과 지식인들에 의해 조선 “특유”의 여성 범죄로 인식되었다. 아울러 남편살해 사건이 가진 후진성의 논리는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 중의 하나는 다름 아닌 ‘통계’를 이용한 ‘비교’라는 방법론을 통해서였다. 식민지 관료주의 담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수’의 해석, 즉 통계라는 ‘수’적 재현을 통해 ‘남편살해 사건은 조선 특유의 범죄’라는 인식이 지적/담론적 계몽모니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와 같은 산술적 분석은 식민지 정부가 생산하는 담론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었다. 더욱이 비교의 기준점이 내지 일본이라는 점에서 통계에 의한 식민통치자의 수적 재현은 완전히 중립적이라 하기 어려웠다. 거기에는 후진성의 논리를 내포하는 계몽의 정치학이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남편살해 사건에 대한 민족주의 지식인들의 논의는 식민주의자들의 그것과 거의 차별성을 구하기가 어려울 만큼 동일했다. 이는 한말부터 근대적 결혼관과 가족관이 조선의 계몽주의적 민족주의 지식인들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혼인 연령에 대한 계몽은 문화의 논리에 의해 서구적 근대성이 작동하는 지점이었고, 일본 역시 그에 따라 문화/근대화를 달성한 국가였다. 물론 문명화를 통해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치달았을지라도, 남편살해의 원인을 ‘조혼’으로 지목하는 것은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시선이 교차되는 지점이었다. 이들 양자는 문명/모더니티라는 부분에서 인식론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본부살해” 사건에 대한 담론은 식민지에서 모더니티가 작동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주지하듯이 ‘조혼’은 식민지 이전부터 문명개화론자들에 의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폐습’이었다. 그렇지만 조혼과 남편살해 사건은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였지, 상호 직접적 관련을 가지는 원인과

결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당시 조혼이 가진 폐해를 부각시키는 방식은 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 부국강병과 관련하여 논의가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식민지에서 모더니티는 문명화 기준에 맞지 않는 습속을 끊임없이 ‘악습’으로 재생산하였다. 그로 인해 식민지는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으로 대상화 되었다. 이런 점에서 남편살해 사건을 통한 ‘조혼’의 ‘악습화’는 식민지 ‘모더니티’의 작동 방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였다. 식민지에서 그것은 전율할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연결되면서 더욱 노골화되었다. 여기에서 나이 어린 여성들에 의해 벌어진 남편 살해는 ‘조혼’이 가진 조선 풍습의 악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식민주의자들은 미개한 지역을 문명화시킨다는 사명으로, 고통받는 조선 여성들의 구원자로,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한다. 반면 식민지 지식인들은 자국의 독립 혹은 발전이 문명화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는 사고를 내면화하게 된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기준에 의해 그것이 가진 식민지 정치성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본부살해”라는 흉악한 여성범죄의 원인이 조혼이었기 보다는, ‘남편 살해’라는 범죄가 ‘조혼’을 ‘악습’으로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담론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선의 낙후성, 그것의 처절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소재가 남편살해 사건이었고, 이를 통해 문명화/모더니티의 논리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부살해”는 ‘조혼’이라는 ‘식민지적 전통’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담론적 상징물이었다. 요컨대 식민지시기 남편 살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비밀상적인 범죄 사건이 어떻게 조선인들의 일상적 삶을 규율해나가는 지를 보여주는 지점이자 식민지 모더니티가 작동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하나만 부연하자면 이 논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남편살해 사건과 조혼이 완전히 무관하다’거나, ‘조혼이 조선의 습속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논문은 ‘조혼’을 조선의 문화 전통으로 본질화하는 시선에 내재하는 문화 본질주의적 패러다임을 문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인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시간성을 달리하는 일본이나 서구의 여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법적 혼인연령에 미달하는 것은 아니었다.⁶⁵⁾ 아울러 남편살해 사건과 조혼을 직접적으로 관련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에게는 조혼 그 자체가 문제였기 보다는 식민지 조선의 가난한 경제상황에서 비롯된 어린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성 결혼이나 거기에 내재된 어려운 현실, 즉 당대적인 삶의 조건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⁶⁶⁾ 따라서 이의 원인을 ‘조혼’으로 일반화하는데는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이 남편살해라는 병리/범죄의 원인이 되는 ‘어떤 행위’가 사회적 관습/전통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 역시 동시에 든다.

65) 1912년부터 1932년까지 20년 동안 결혼 연령을 추적한 이순탁에 의하면, 1912년 남자의 평균 결혼연령은 18.2세에서 22.2세로, 여자의 그것은 19.5세로부터 18.7세가 되었다고 한다. 법적 혼인 연령이 남자 만 17세, 여자 만 15세라는 점에서 이는 거기에 미달하는 연령은 아니다(이순탁, 「조선인의 결혼연령의 추이」, 『신동아』 5권 1호, 1935. 1, 32~36쪽).

66) 박효승, 2000, 「일제하 하층여성의 조혼과 삶」, 경북대 석사논문.

Abstract

The Cases of “Women Murderers of Husband” and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Colonial Korea

Hong, Yang-Hee

In colonial Korea, husband killing had been made into a crime “unique” to the colonial Korean society. Those women who killed their husbands were depicted as a victim of the evil marriage custom and Sobu(tender girl wives) on the one hand, and Dokbu, erotic femme fatal, on the other hand. These seemingly contradicting image were not separate and distinct. They rather constituted the two sides of the same coin. Discourses such as “a young wife who committed atrocious crimes”, and “atrocious crimes done by tender girl wives” magnified to the full point “barbarity” and “tragic nature” stemmed from the Korean unique practice of early marriage.

This develop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way in which the modern understanding of marriage and family was produced and consumed by the enlightened intellectuals of Korea. In this regard, the efforts to enlighten the Korean practice of marriage represented an attempt to construct “modernity” in colonial Korea. The tendency to make “early marriage” into a devil practice was a case in point to demonstrate the mechanism in which the “modernity” was put into action. That also reflects the process in which the discourse and reality of the colonial modernity transformed customs and practices not suitable for western civilization as “evil practices.” With such efforts, colonies were

made into an object of "barbarity".

After all, it wasn't that the early marriage in the colonial Korea caused the cruel crime of husband killing. But that the crime of husband murder made the early marriage into an evil practice. The husband killing was a symbol of the discourse /which made the early marriage evil. The early marriage was not much of the cause of the spouse killing as its effect. It is also a good case to show how the gaze of modernity disciplined every day life of the people in colonial Korea.

Key Words : mariticide, early marriage, tradition, colonial modernity,
colonial representation, women's crime